

# 평가요약표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문화예술향유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b>1. 보조사업의 타당성</b>	<b>66.0</b>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b>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b>	<b>12.0</b>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2.0
2-5. 평가결과 이행여부	0.0
2-6. 실집행 실적	0.0

구분	총평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방식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문화이용권'내역사업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신나는 예술여행'내역사업은 성과지표로 설정된 프로그램수 등은 투입지표이지 성과지표라 볼 수 없어 성과지표 조정이 필요함.</li> <li>- '신나는 예술여행'내역사업의 사업관리와 사업효율성을 높이고 '방방곡곡문화공감'내역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역할분담 확대가 필요함</li> </ul> </li> </ul>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관리 및 성과지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문화이용권(188,068백만원)'내역사업의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19년(6,890백만원), '20년(8,738백만원), '21년(14,093백만원) 발생하여 집행잔액 관리가 필요함.</li> <li>- '신나는 예술여행'내역사업의 성과지표 중에서 참여단체 중 사회적 기업수와 프로그램 수는 투입지표로서 한계가 있으며 '방방곡곡문화공감' 내역사업의 사업비 중에서 지자체 분담을 상향 필요성 있음</li> </ul> </li> </ul>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문화이용권(188,068)의 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20년109,624)하고 있으나 예산 증가에 따른 불용액을 감축 시킬 수 있도록 실제 카드 이용률 향상 및 문화누리카드 용이한 이용을 위한 방안 제고가 필요함</li> <li>· 보조금 수혜단체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노력과 사업관리 개선이 필요함</li> </ul>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보조사업의 목적, 재원, 재원의 용도, 재원관리 주체 및 조직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서 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가지원이 타당함

#### < 문화예술진흥법 >

##### 제16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제15조의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20조~35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등기, 정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령동법 시행령

제23조의 5(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동법 시행령제27조~34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운영, 평가·조사연구, 사업계획 승인 등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 관리·운용·조성 등

- ‘문화예술향유지원’세부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및 참여를 제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복지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및 동법 제18조를 법적근거로 하여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힘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와 제18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과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동 보조사업은 국정과제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지원의 근거는 타당함

##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04년부터 단년도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신나는 예술여행’, 지역문예회관 프로그램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내용과 목표가 비교적 분명하고 명확함
- ‘통합문화이용권’ 내역사업은 17개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지정지원으로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문예진흥기금과 지방비를 7:3으로 매칭하고 있으며 국비부담금은 복권기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20년 175만명, ’21년 197만명에게 발급되었고 ‘22년에는 263만명에게 발급할 예정에 있어서 사업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용이 발생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통합문화이용권’내역사업의 성과지표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만족도, 문화누리카드전액미사용자 비율 등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단순 투입 지표보다는 사업의 성과를(문화향유향상정도 등)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문화누리이용카드 미사용자 비율은 ‘19년과 ’20년은 초과달성하고 ‘21년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목표치 대비 94.7%의 실적을 달성해서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카드이용액과 발급된 카드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역별로 문화예술기회 격차 해소 모색 방안 마련 필요함

< 표 1-2-2 > 최근 3개년 성과평가 결과

구분	단위	사업명	구분	19년	20년	21년	측정산식(측정방법)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만족도	점	통합문화이용권	목표	86.4	86.9	87.1	$\frac{\sum[(\sum(7\text{점척도}-1)\times 16.7) \div \text{전체응답자수}] \text{ (외부기관 만족도 조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전화조사)}}$
			실적	86.4	87.5	88.0	
			달성도	100%	100.7%	101%	
문화누리카드 전액 미사용자 비율 (하향지표)	%		목표	5.1	4.7	4.4	$\frac{\sum(\text{당해년도 문화누리카드 전액 미사용자 수} / \text{당해년도 문화누리 카드 발급자 수}) \text{ (주관카드사 시스템 집계)}}$
			실적	4.9	4.4	4.6	
			달성도	104.2%	106.4%	94.7%	

- ‘신나는 예술여행’ 내역사업은 ‘21년 이전까지 사업방식(매칭형, 기획형, 지역자원연계형, 축제형), 장르(시각순회, 문학순회), 참여 단체성격(청년형, 청년형 外)에 따라 선정기준을 복잡하게 설정되어 유사 중복 가능성이 많은 사업형태를 띄었으나 ‘21년 이후에는 사업세부 유형을 수요자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개선하였음.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21년 423개, ‘22년 318개) 단체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구조여서 사업관리의 효율화가 필요함
- 동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된 지표 중에서 순회참여 사회적 기업수, 문화향유프로그램 횟수는 투입지표이므로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표 1-2-2 > 최근 3개년 성과평가 결과 (신나는 예술여행)

성과지표	개념	목표치 설정 합리성	목표치 달성 수준
(재평지표) 소외계층문화순회참여 사회적 기업수	사업 직접 보조단체나 참여단체 중 사회적 기업수	전년대비 5% 상승 목표치 설정	본 지표는 2019년 신규지표로 향유사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전년대비 5% 상승의 의무적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코로나로 참여 저조
(재평지표) 신나는예술여행 사업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사업 예산 대비 방문 공연·전시 프로그램 시행 수	프로그램수 3개년 평균의 105% 수준 설정	2021년의 경우 연중내내 코로나 확산세가 강하게 지속되어 예술단체의 프로그램 시행에 어려움이 많아 실적이 저조함
(보조지표) 신나는예술여행 사업 수혜 자 관객수	방문 공연·전시 프로그램 관람객수	전년대비 3% 상승 목표치 설정	관람객수의 경우 2019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 후 저조함
(보조지표) 신나는예술여행 관객만족 도	만족도지표	전년대비 0.3% 상승 목표치 설정	신나는예술여행 프로그램의 관람객 만족도는 90점이상의 고득점을 유지하고 있음
(보조지표) 신나는예술여행 사업 예산 대비 참여예술단체 비율	사업 예산 대비 직접 보조지원 예술단체 수	전년대비 3% 상승 목표치 설정	사업예산대비 참여예술단체 선정을 점차 확대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예술단체의 활동 장려

- ‘방방곡곡 문화공감’ 내역사업은 지방 문화 인프라 시설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와 문화복지 차원의 사업이나 동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된 수혜자수와 관객만족도지표를 보완할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표 1-2-2 > 최근 3개년 성과평가 결과 (방방곡곡 문화공감)

구분	성과지표1<수혜자 수>				성과지표2<수혜자 만족도>			
	구분	19년	20년	21년	구분	19년	20년	21년
연간 목표치 현황	목표	732,814명	748,811명	649,387명	목표	88.0점	89.3점	88.0점
	실적	700,690명	432,248명	333,119명	실적	88.8점	87.5점	93.0점
	달성율	95.6%	57.7%	51.3%	달성율	100.9%	98.0%	105.7%
성과 목표치 설정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산식 : <math>\sum(\text{지원프로그램 수혜자 수})</math></li> <li>■ 통합재정사업자율평가 성과계획 지침 적용 하여 649,387명으로 설정</li> <li>- 최근 3개년('18년~'20년) 사업 평균 수혜자 수 <math>\times(1+0.05)</math></li> <li>■ 측정대상기간 : '21.1.1~'21.12.31</li> <li>■ 측정수행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li> <li>■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사업 참여 문화예회관 공연관람객 수 집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산식 : 전반적 만족*0.4+서비스품질*0.3 +불일치*0.2+사회적 책임*0.1</li> <li>■ 문화체육관광부 고객만족조사 PCI 2.0 모델의 11점 척도</li> <li>■ 측정수행기관 : 리서치랩</li> <li>■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현장을 방문하여 공연관람자 대상 현장인터셉트 조사</li> </ul>			

###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정책 목표와 사업내용이 일치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서 국가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동 보조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기금의 조성과 용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기금의 사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통합문화이용권’ 내역사업은 유사중복성은 없으나 ‘신나는 예술여행’내역사업은 전문공연장이 아닌 장소를 찾아가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임. 특정 계층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변별력이 없어서 특성화가 필요함. ‘방방곡곡 문화공감’ 내역사업은 전국 문화예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의 수혜자는 지역예술가, 예술단체 및 문화회관 등의 보조사업 수행자와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약 263만명, 국민이 될 수 있어 비교적 수혜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음

###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별도의 행정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동 보조사업의 '22년 예산은 226,274백만원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20년 145,637백만원, '21년 167,123백만원)하고 있으나 3개 내역사업 모두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제고한 후에 예산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특히 '통합문화이용권' 내역사업의 증가폭이 커서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통합문화이용권' 내역사업 예산은 '21년(126,094백만원)대비 49.1%(61,974백만원) 증액되어 '22년(188,068백만원)에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원금액이 늘어서 '21년부터는 개인당 10만원을 지원하며 수혜대상도 계속 늘어서 '21년 177만명에서 '22년 263만명으로 66만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운영비(3,186백만원)으로 모바일앱(932백만원) 증액되었고 더불어 홍보비도 증가하였음(782백만원). 매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나 발급율은 100%를 달성하고 있어 발급 잔액은 없음. 다만 발급자들의 미사용잔액으로 인한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재충전 제도 도입, 비대면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 가맹점확대, 전화결제가맹점 안내책자 발송, 모바일 앱 출시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2월 기준)
지원대상자 (사회보장정보원 통계)		-	242만명	251만명	263만명	256만명	220만명	238만명	263만명
사업 예산 (백만원)	국비(70%)	51,791	68,000	55,270	69,875	82,103	91,501	109,624	140,154
	지방비(30%)	21,398	28,754	23,250	29,351	34,553	38,400	46,170	59,100
	합계	73,189	96,754	78,520	99,226	116,656	129,901	155,794	199,254
1인당 지원금 (연간)	지원금액	10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지원기준	가구별 1매	개인당 1매(6세 이상)						
예산상 지원가능 인원		-	158만명 (65.3%)	153만명 (61%)	161만명 (61.2%)	164만명 (64.3%)	160만명 (72.7%)	171만명 (71.8%)	197만명 (75%)
카드발급매수		67만매	138만매	145만매	152만매	159만매	163만매	175만매	197만매
발급률(%)		102.2	87.2	94.8	94.6	96.7	101.8*	102.5*	100.3
이용률(%)		92.6	76.9	84.2	85.8	87.8	92.3	91.9	89.8

- '신나는 예술여행' 내역사업은 '21년(24,229백만원) 대비 '22년에 21,574백만원으로 (2,665백만원 감, 11.0%)으로 감소하였음. 소외계층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향유 향상을 입증할 수 있는 계량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함

- ‘방방곡곡문화공감’ 내역사업은 '21년(16,800백만원) 대비 '22년에 16,632백만원으로 (168백만원 감, 1.0%)감액 되었으나 거의 동일한 수준의 예산임. 해를 거듭할수록 프로그램 갯수, 지원기관 건수 등의 양적 확장보다 우수한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선진적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한 점이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수행하며 「보조금법 제9조」에 따라 국비를 ‘정액 지원’하고 있어 적절함
- 보조금법 제9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현행 보조율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회 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됨
- 지자체 경상보조 70%의 비율을 점차 낮추고 문예회관의 재정상태에 따라 보조율 차등
- 최근 3년간 부처의 실집행률은 99.7%로 적절하지만 집행잔액의 이·불용이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함
- '19년(10,833백만원), '20년(8,301백만원), '21년(31,819백만원) 불용액 발생, '21년 이월액(16,919백만원)발생.

<표 1-4-4>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당초	수정(A)								
2018	115,833	115,833	115,682	115,682	-	115,682	104,849	-	10,833	90.5
2019	129,780	129,780	129,473	129,473	-	129,473	121,172	-	8,301	93.4
2020	140,384	164,364	163,811	163,811	-	163,811	131,992	-	31,819	80.3
2021. 12월기준	163,904	177,904	177,673	177,673	-	177,673	160,985	16,919	-	90.5

< 표 1-4-5 >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세부사업)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	181,183	226,274	336,379	430,365	524,376	618,449	729,399
(내역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40,154	188,068	280,505	372,815	465,100	557,394	668,003
(내역사업) 신나는예술여행 사업	24,229	21,574	26,574	27,371	28,192	29,038	29,909
(내역사업)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	16,800	16,632	29,300	30,179	31,084	32,017	32,978

### 1-5 사회적가치 실현(가감점)

- 가점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에 공헌하고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측면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에 공헌하고 있다고 판단됨. 아래와 같이 사회적 가치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표 1-5-1 > 사회적 가치 직접적 기여

사회적 가치	직접적 기여 내용						
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기준 분류에 따라 작성)	○ (문화권리 보장)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활성화를 통한 취약 계층 문화권리 확대						
	구분	내용					
	지원확대	- 지원금, 카드 전액사용자 및 평균 이용금액, 발급자수 증가 → 저소득층 문화향유기회 증가 및 소득 간 문화격차 완화					
	권리구제	- ('20)위탁가정 거소아동(만14세 미만) 약 3,000여 명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 복지누락 대상자에게 '권리구제서비스' 제공(총 38,637명)					
서비스	- ('20)언어장애인 배려를 위한 고객센터 채팅상담 및 챗봇상담 신규 도입, 문자상담 운영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에게 무료 신문구독 지원						
<b>정량적 증빙자료(과거 수치 비교 등 수치 활용)</b>							
○ 문화권리 보장							
- 저소득층 문화향유기회 증가 및 소득 간 문화격차 완화							
	구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저소득 가구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0만원 미만	35.2	38.3	50.4	56.0	27.8	코로나19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람률 증가추세 코로나19전까지 격차 완화추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71.3	78.3	81.5	81.8	60.5	
	소득 간 문화향유 격차(%)	58.3	58.6	49.4	40.8	50.6	

- 감점 없음
- 법령 등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보조금 반환, 환수, 시정명령 등) 사례가 있으나 공탁금 수령 완료함
- 보조사업자 대비 행정처분비율은 '신나는 예술여행' 내역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19년 369건 중의 1건(0.3%), '20년에는 277건 중의 1건(0.4%)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었음. 보조사업자 대비 비율이 높지 않지만 동 내역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법령위반 행위가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함

연도	행정처분 권자	행정처분 대상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용	처분근거(법령 등)
'19년 (내역사업) 신나는예술 여행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 회	브러쉬씨어터 유한책임회사	허위 임차계약, 사레비 편취	공탁금 수령 완료 (43,647,370원)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20년 (내역사업) 신나는예술 여행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 위원회	디스피너스	사레비 편취	환수 조치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 등의 공개적인 보조사업자 선정이 불가함
- ‘신나는 예술여행’ 내역사업과 ‘방방곡곡 문화공감’ 내역사업은 기재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적극 준수하여 제정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제 규정 및 지침(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심의업무 공정 처리규정,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 지원심의 움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심의위원 직무수행 지침 등)에 따라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각종 공모 사업의 지원 및 심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교부조건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을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
- 동 세부사업은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부처 집행 관리대상사업으로 일부 내역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어, 매월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지원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받는 등 적절하게 관리됨

###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적절함
- 일정 금액 이상의 모든 내역사업에 대해 보조사업 정산 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집행액 발견시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법령에 의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사업실적보고 및 소액 사업을 제외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받는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 부정수급 여부를 적절히 감독하고 있음
-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사업의 경우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의무화하였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등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음

##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감점)

### < 자체 사업관리 노력 >

- 가점 있음

-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자체사업관리 노력 기울임

< 표 2-4-1> 자세사업관리 노력

주요 개선노력	~2019년	2020~2021년	2022년~	개선효과 (기대효과)
보조사업자 선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의한 비공모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 (집행) '발급'중심의 홍보 강화, 가맹점 질적 관리 노력 지속 · (사후관리)사업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	· (집행)'발급'에서 '이용'으로의 홍보 방향 전환, 코로나19 대비 예산집행 제고를 위해 이용자 발급·이용환경 개선 · (사후관리)다각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관계자, 전문가, 외부평가 결과분석을 통한 전략·과제 도출 시행	· (집행) 분야별 할인가맹점 확대, 모바일 앱 결제 도입 등 · (사후관리) 각종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의 장기적 성과관리, 이용현황 데이터 활용 강화	· 문제점 인식을 통한 사업관리 개선으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
부정수급 관리	· 부정행위 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부정행위 관리지침 마련	· 부정행위 신고센터 개소('20.4월) · 온라인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1.8월) ·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자가점검 캠페인 추진('21.12월)	· 부정행위 신고센터 기능 강화 · 모바일앱 내 신고센터 연계 · 부정관련 매뉴얼 책자 제작·배포 · 부정 주요요인인 현금화에 교육·홍보 등으로 경각심 제고 등 대책마련	· 판매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외부기관 협력 및 상시모니터링으로 처벌 강화 · 신고센터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추진

< 부정수급 적발노력 >

- 가점 있음
- 부정수급 자체적발 노력을 기울임. 자체적발 건수 '19년 3건,'20년 29건, '21년 27건으로 외 부적발 사례에 비하여 높음

< 표 2-4-2>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수급 자체적발 사례

연도	구분	이력	적발기관	내용	조치결과
2019년	자체적발	3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담당자 허위발급 · 담당자 목적 외 사용 유도 · 제3자 문화누리카드 사용	· 문체부에서 지자체에 처리결과 확인중
	외부적발	1건	국무조정실	· 복지시설 목적 외 물품 구입 등 적발	· 복지시설 관리자 횡령 여부 수사 - ('20.3.16~) 및 지자체 추가 점검 진행('21.10~)
	전체	4건			
2020년	자체적발	29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온라인 사이트 내 양도양수(8건)	· 예술위 경고 및 경찰 조사예정(8건)
				· 제3자 문화누리카드 사용(1건)	· 지자체 경찰 조사 후 당사자 협의중(1건)
				· 오프라인 양도양수 등(7건)	· 예술위 확인 후 경고 및 조치완료(7건)
				· 가맹점 목적 외 사용 유도(13건)	· 지자체 가맹점 점검 후 조치완료(13건)
	외부적발	0건	-	-	-
전체	29건				
2021년	자체적발	27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온라인 사이트 내 양도양수(15건)	· 예술위 경고 및 경찰 조사예정(15건)
				· 가맹점 목적 외 사용 유도 등(12건)	· 지자체 가맹점 점검 후 조치완료(9건) 및 지자체 점검 진행중(3건)
	외부적발	0건	-	-	-
전체	27건				

< 자체 사업관리 노력 감점 >

- 감점 있음
- 동 보조사업은 3년간 총 111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여 사업관리가 필요함
- 2019년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등 202건, 2020년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등 90건, 2021년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등 165건 등 3년간 총 457건의 부정징후 통보내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2019년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등 202건 중 49건, 2020년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등 90건 중 6건, 2021년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등 157건 중 8건에 대해서는 점검기한(45일 이내)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시스템에 미등록되었음
- 따라서 2019년 부정징후 통보내역 202건 중 37건, 2020년 부정징후 통보내역 84건 중 30건, 2021년 부정징후 통보내역 157건 중 44건 등 3년간 총 111건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었음.
- 이 중에서 2019년 1월 18일 전자세금계산서 구매취소 관련으로 통보된 1건(120,072,500원)에 대해서는 재판 중에 있으며, 사망자바우처카드사용 관련 1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환수 처리 중임(3,163,800원)
- 2020년 8월 4일 통보된 사망자바우처카드사용 관련 1건(2,971,100원), 해외체류기간 바우처카드 사용 1건(505,050원),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취소 관련 1건(404,000원)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환수 처리 중임
- 2021년 2월 17일 통보된 사망자바우처카드사용 등 관련 2건(3,186,870원, 3,050,430원), 해외체류기간 바우처카드 사용 2건(68,020원, 294,000원)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환수 처리 중임

< 표 2-4-4 > 부정징후 의심사업 통보내역(2019~2021년)

사업	연도	통보건수	점검여부		점검기한 미준수	시스템 미등록	부정확인 건수
문화예술 향유지원	2019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등 202건	점검O	153건	45건	0건	37건
			점검X	49건	49건	49건	0건
	2020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등 90건	점검O	84건	6건	0건	30건
			점검X	6건	6건	6건	0건
	2021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등 165건	점검O	157건	6건	0건	44건
			점검X	8건	8건	8건	0건
	총계	사망자 바우처 카드사용등 457건	X		120건	63건	111건

< 표 2 > 부정확인 내용(총 111건)(2019~2021년)

(단위: 원)

사업	연도	통보내용	통보일자	점검 및 부정확인 일자	부정확인 금액	조치내용
문화예술 향유지원	2019	전자세금계산서 구매취소 관련 건	20190118	20190129	120,072,500	재판중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관련 건	20190118	20190222	3,163,800	지자체에 환수 처리 안내완료
	2020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관련 건	20200804	20200909	2,971,100	지자체에 환수 처리 안내완료
		해외 체류기간 중 바우처카드 사용 관련 건	20200804	20200908	505,050	지자체에 환수 처리 안내완료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 관련 건	20200804	20200904	404,000	반납조치 시행
	2021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관련 건	20210217		3,186,870	지자체에 환수 처리 안내완료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관련 건	20211001		3,050,430	지자체에 환수 처리 안내완료
		해외 체류기간 중 바우처카드 사용 관련 건	20210217	20210304	68,020	지자체에 환수 처리 안내완료
		해외 체류기간 중 바우처카드 사용 관련 건	20211001		294,000	지자체에 환수 처리 안내완료

2-5 과거 평가결과 이행 여부(감점)

- 감점 없음
- '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결과에 따라서 '22년 예산 편성시에 '신나는 예술여행' 내역사업 감축함

< 과거 평가 결과 이행 여부 >

2019년 평가결과	반영여부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실적
· 평가결과: 감축 · 주요 지적사항: 지원규모 대비 성과지표가 부족하며, 사업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음.	반영	· 2022년 신나는예술여행 사업 예산 2019년 대비 3,715백만원 감축 ('19년 25,289백만원→'22년 21,574백만원)

2-6 과거 3개년 실집행 실적(감점)

- 감점 없음

구 분	3년 가중평균 실집행률 (A×20%+B×30%+C×50%)	2019년 (A)	2020년 (B)	2021년 (C)
실집행률	99.7%	99.8%	99.6%	99.8%
실집행 부진 사유**	· 해당 없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정책 목표와 사업내용이 일치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서 국가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동 보조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기금의 조성과 용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기금의 사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동 보조사업의 '22년 예산은 226,27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20년 145,637백만원, '21년 167,123백만원)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제고한 후에 예산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특히 통합문화이용권(188,068)의 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20년 109,616)하고 있으나 예산 증가에 따른 불용액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실제 카드 이용률 향상 및 문화누리카드 용이한 이용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나는 예술여행 (21,574백만원)'내역사업과 '방방곡곡문화공감(16,632백만원)' 내역사업의 성과가 최근 2년 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조한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사업효율화 필요함
- 상기한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하여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에 용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조금지원의 재정규모 확장을 위한 기준마련과 성과관리가 필요함.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본 사업의 목적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계량화된 목표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함
- 동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된 참여단체 중 사회적 기업수와 프로그램 수는 투입지표이지 성과지표라 볼 수 없어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함
- 보조사업자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과 사업관리 강화 방안이 요구됨